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안)에 대한 고려사항 최소 법통과 2년 후부터 시행돼야



장계봉 위원
치협 치의전문의제 시행위원회

1962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자 전원 불참으로 시험이 무기 연기된 이후에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40여 년에 걸쳐 시행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협회 제50차 정기총회(2001. 4. 21 경주힐튼 호텔)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시제반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결의 내용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구강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기존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한다.
- 전문치의 과목 : 전 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시기 :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 퇴임시는 “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회의에서 연구·검토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포함한 13개 항의 관계법령 개정(안)을 제출(2002. 11. 29)하여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으며, 도입을 전제로 오늘 공청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은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까지 표방하게 함으로써 전문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의의 과다배출과 과목간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바,

현재 입법예고된 (안)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규정 제정에 있어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정하는데 상기 지적한 문제점(전문의의 과대배출)을 답습하지 않으면 협회의 결의사항인 소수정예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상 11개 치과대학에 국한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과행 방지 및 전공의 교육을 시키는 수련병원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에 구강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설치(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1차 의료기관(일반의)이란 국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검진 및 치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의료 수요는 전문적인 진료보다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로 해결이 가능한 질환이 많으며 이러한 질환은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한 지역사회에서 관리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사 전문의제도처럼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 중 전문의가 대다수인 현 제도로는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할 수 없으며 단지 시설 및 인력조건에 따라 1차 진료와 2차 진료 등이 구분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협회 총회 결의내용을 토대로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

있는 1, 2차 진료기관의 구분을 그대로 구강보건 진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의가 자신의 해당분야에 대하여 1차 의료기관과는 다른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진료에 접근함으로써 내실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행시기에 대하여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의료계의 특성상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기존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행적적으로도 구체적인 시행방침과 자료조사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서 규모, 진료과, 전속 전문의 수, 시설 뿐 아니라 교육내용에 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와는 또 다른 조사방법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의 제도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계부처로부터 인정의제도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통지 받은 바 있으며, 전문의와 인정의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혼돈을 초래해 전문의제도의 시행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계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총회 결의내용을 토대로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최소한 법이 통과된 2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의료법 제55조 제2항이 개정(2002. 3. 30)되어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 없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동법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허용 규정이 전문과목 표방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진료과목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거쳐 치과계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후배 치과의사들을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개원가 및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원 각자가 서로 양보하여 대처한다면 치과계의 좋은 결실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